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82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송재봉 · 조계원 · 최혁진
김문수 · 이용선 · 허성무
황명선 · 남인순 · 민병덕
이수진 · 김우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전자담배 인터넷 판매·광고의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6(전자담배 인터넷 판매 · 광고의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